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신 언 근 의원

안녕하십니까? 신 언근 의원입니다.

지난 10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화재예방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

건축공사장 등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·용단으로 인한 화재가 끊
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서장에게 용접·용단 작
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토록 하는 한편,

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
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
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고,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